

# 하나로빌딩 옆 공영(노외)주차장 현장 안내문

▣ 입찰자는 현장 안내문을 숙지하여 반드시 주차장 현장실사를 하신 후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현장실사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입찰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명 : 하나로빌딩 옆 공영(노외)주차장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277일대
- 주차구획 및 급지 : 11구획, 1급지
- 운영현황

주차장명	위치	급지	면수	요금 (5분당)	운영시간	
					평일 / 공휴일	주말(토·일요일)
하나로빌딩 옆 공영(노외)주차장	종로구 인사동 277일대	1	11	500원	10:00~21:00	미운영 (종로구 별도 사용)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4호의 설날 연휴기간 및 제9호의 추석 연휴기간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 주차요금 : 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별표1의 규정에 의한 1급지 요금
  - 1회 주차 시 5분당 500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차량의 경우 주차 요금의 80% 할인
  - 경차 및 저공해 자동차,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는 주차요금의 50% 할인
  - 주차요금 할인 세부 조건 및 그 외 공영주차장 관련 요금 사항은 종로구 주차장 설치및관리조례 별표1.[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 따릅니다.

※ 계약기간 중 주차장 운영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시 개정된 법령(조례)를 준수해야 함.

- 특기사항
  - 해당 주차장의 관리운영권 및 책임사항이 수탁자(사용자)에게 있으며, 첨부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 및 준수 사항 필히 확인 후 신중하게 응찰하기 바람
  - 영업배상책임가입한도 : 대인배상, 대물배상 각 1억원 이상
  - 계약사항 관련 제소전화해 및 사업자등록 의무
  - 해당 주차장을 차고지로 증명하는 관련 서류 발급 불가

# 주차장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주차장명 : 하나로빌딩 옆 공영(노외) 주차장

● 주차장 위치 및 구획 현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5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1구획당)

구 분	노 상 주 차 장				노 외 주 차 장		
	1회주차시 5분당	1일주차권 (야간에 한함)	월 정 기 권		1회 주차시 5분당	월 정 기 권	
			주 간	야 간		주 간	야 간
1급지	500	5,000	250,000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4,000	180,000	-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3,000	100,000	-	150	100,000	40,000
4급지	100	2,000	50,000	-	100	환승목적주차시 40,000 기타 50,000	30,000
5급지	50	1,000	30,000	30,000	50	30,000	30,000

※ 거주자우선주차장

- 노상주차장 : 월 5만원
- 노외주차장 : 월 6만원

(비 고)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구획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1급지 : 사직로·율곡로·왕산로·다산로·청계천로·새문안길 및 의주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주차장으로서 4급지,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단, 신문로1가 및 2가의 경우 새문안길과 직접 접하지 않는 지역도 1급지로 한다.
  - 나. 2급지 :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다. 3급지 :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 라. 4급지 :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중 상업 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마. 5급지 :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환승주차장
-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정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바. 구청장이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4.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 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 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구청장은 개인택시·용달화물과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자동차에 한정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6.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제시한 경우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7. 「자동차관리법」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8.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9.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 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 목적 주차 시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0. 2·3·4·5급지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 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 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1. 삭제 <2020.7.17.>
12.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종로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4.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5.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의 설날 연휴 기간 및 제9호의 추석연휴 기간에는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6. 「공직선거법」 제2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2,000원을 할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기간은 해당 선거일부터 3개월까지로 한다.
1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을 초과하거나 1일 및 월정기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8. 서울특별시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개정 2023. 12. 22.>
19. 「서울특별시 종로구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3조에 따라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단,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정기권은 제외한다.)
20. 공영 주차장 월 정기 주차제를 시행할 경우, 월 정기주차의 배정은 순번제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이 다수인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해당되는 사항이 동수일 경우에는 종로구민, 주차장이 위치한 동 주민, 먼저 신청한 사람 순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 가. 종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
  - 나. 65세 이상 어르신으로서,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
  - 다. 주차장이 위치한 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
  - 라. 주차장이 위치한 동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등록한 사람
2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구역 인근에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단, 거주자우선주차장과 정기권은 제외한다.)

22. 거주자우선주차장 방문자 이용요금은 급지별 시간요금제를 적용하되, 주차장 상황에 따라 단순요금제(4시간 미만 2,000원, 4시간 이상 5,000원)로 운영할 수 있다.
23. 종로구와 약정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공유주차구획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은 최초 30분에 600원이며, 30분 초과시부터 5분마다 100원씩 가산된다.
2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시설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에서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5.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6.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